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11.10.(화) 조간	배포	2026.11.9.(월)

상장사 대상 '2026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' 실시

1 개 요

❶ 배경 및 그간 실시 경과

□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사를 대상으로 **주요 위반사례**를 위주로 **불공정거래 예방교육***을 실시하여 상장사들의 **임직원 관리·감독**활동을 지원

* '23년 13사 → '24년 10사 → '25년 15사 → '26년 20사(예정)

○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시장참여자들에 비해 **회사 내부정보**에 대한 **접근성**이 높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할 **우려**가 높으며,

○ **고의적인 위법 행위**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대한 **이해 부족**이나 **부주의**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

○ 금번 교육을 통해 상장사 임직원이 **관련법규**와 **주요 위반사례**를 충분히 **이해**하고 관련 규제를 **준수**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

❷ '26년 실시계획

□ 2026년 금융감독원의 '**찾아가는 교육**'은

❶그간 상장사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교육을 **금융회사로 확대**하였고,

❷**대상회사·임직원 수** 및 대상회사 **소재지 분포**를 전년 대비 **크게 확대**하였으며,

❸임직원 **관심도**가 **높은 주요 사례**를 **선별**하여 **맞춤형 교육**을 실시한다는 점에서, **예방효과 및 교육 만족도가 클 것**으로 기대

□ **(대상)**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하여 **상장사 대상**으로 **교육 수요조사**를 **실시**(8월)하였으며,

○ 신청회사 중 **과거 교육실시 여부, 수강인원**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되,

○ 보다 많은 회사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대비 대상회사를 **확대**(+5개사)하여 **총 20개사**(코스피 7사, 코스닥 13사)를 **선정***

* (회사수) '24년 10사 → '25년 15사 → '26년 20사(예정)
(교육인원) '24년 360명 → '25년 800여명 → '26년 1천여명(예정)

○ 한편, 그간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**금융회사**(증권사 2개사)를 교육대상에 포함

□ **(방식)** 불공정거래 조사경험이 풍부한 **금융감독원 직원**이 **직접 회사***를 **방문**하는 **'찾아가는 교육' 실시**(11월 예정)

* 서울 6사, 수도권 11사, 지방 3사

○ 특히 대면 교육기회가 비교적 적은 **서울 외 수도권·지방 소재 회사 비중**을 **확대**하여 **'찾아가는 교육'**의 **실효성 제고**

* 수도권·지방 소재 회사 비중: '24년 **20%**(2사) → '25년 **40%**(6사) → '26년 **70%**(14사)

□ **(내용)** **임직원**들의 관심도가 높은 **미공개정보 이용, 단기매매차익 반환** 규정 등을 **주요 위반사례** 및 **조치사례** 등과 함께 교육

○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**규제체계** 및 최근 **강화된 제재내용***도 안내함으로써 **상장사 임직원**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**경각심**을 **제고**

* 불공정거래 적발시 형사처벌 외에 ❶과징금 부과, ❷이용계좌 지급정지, ❸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❹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등

2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

❶ 미공개정보 이용(호재성 정보 이용) ·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

□ A사 공시업무 담당 이사 甲은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약개발 관련 **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**를 **직무상 지득**하고, 해당 공시 직전 **지인 乙 명의 계좌**를 통해 동사 주식을 **매수**하였고 정보 공개 후 **주가**가 **상승**하자 동 주식을 **매도**하여 **부당이득 취득**

○ 한편, **지인 명의 계좌**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**소유상황 보고의무***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음

* 상장법인의 임원은 해당법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(명의무관, 자기계산으로 소유)상황 및 변동내용을 증선위(금감원)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

➡ **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**(자본시장법 제174조) 및 **소유상황 보고의무**(자본시장법 제173조) **위반혐의**로 조치(甲)

◈ **임직원**은 **정보접근**이 **용이**한 내부자로서, 회사 **내부정보**를 **이용**하여 **증권 등**을 **매매**한 경우 **자본시장법 위반**에 해당

- 한편 신약개발 관련하여 임상시험 성공,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의 정보는 '**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**'에 해당할 수 있음

❷ 미공개정보 이용(악재성 정보 이용) ·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

□ B사 **대표이사** 甲은 '감사의견 거절'이라는 **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**를 **직무상 지득**하고,

○ 이를 이용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 **본인 및 丙 명의** 계좌를 통해 **동사 주식을 매도**하였으며,

○ B사 **사내이사** 乙은 감사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 미공개 중요정보를 **직무상 지득**하고,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**C사 명의** 계좌의 **주식**을 **매도**하여 **손실을 회피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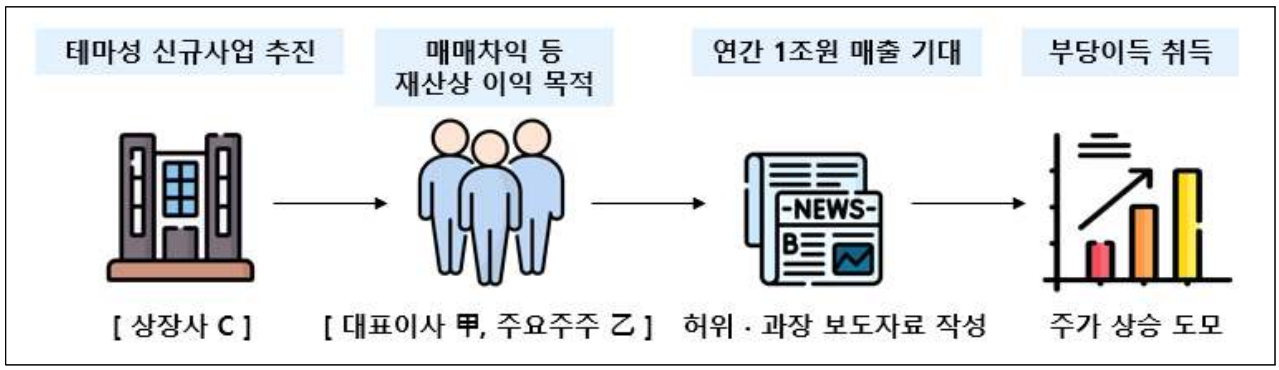
○ 한편, 甲은 **丙 명의 B사 차명주식**에 대한 **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**를 **미이행**하였으며, **丙 명의 B사 주식**을 담보로 **대출계약 체결사실**도 **보고하지 않음**

➡ **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**(자본시장법 제174조) 혐의(甲, 乙) 및 **대량보유**(자본시장법 제147조)·**소유상황 보고의무**(자본시장법 제173조) **위반 혐의**(甲)로 조치

◈ **임직원**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**미공개 중요정보**를 **지득**하고 이를 **매매**에 **이용**한 경우 **자본시장법 위반**에 해당

- 한편 **'감사의견 거절'** 정보는 **'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'**에 해당할 수 있음

❸ 부정거래 (허위 · 과장 언론보도)



□ C사 **대표이사 甲 및 주요주주** 乙은 신규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**테마성 신규 사업** 추진을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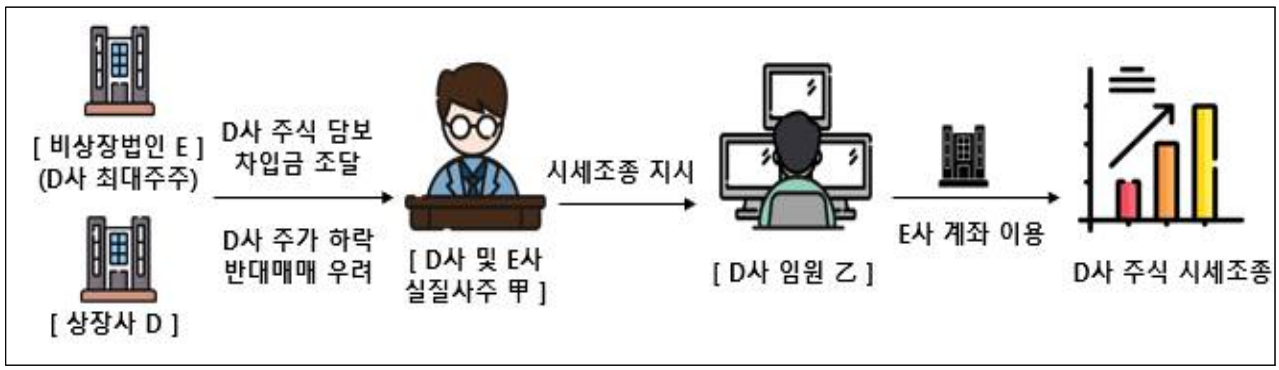
○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고 실제 경제성 평가나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사업으로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케 하는 **허위내용의 보도자료**를 배포하고, **주가상승을 도모**하여 **부당이득 취득**

➨ **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**(자본시장법 제178조) **혐의**로 조치(甲·乙)

◈ 신사업 추진 관련 **허위·과장의 언론보도** 등은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투자가치에 대한 **잘못된 판단**을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**신뢰성을 해칠 위험**이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,

-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'**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**(부정거래 행위)'에 해당할 수 있음

❹ 시세조종 (주가 하락 방지)



□ 甲은 **D사** 및 **D사의 최대주주**인 **E사의 실질사주**로서 E사가 보유한 D사 주식을 담보로 차입금을 조달한 상황에서 **담보비율 유지** 및 **반대매매를 방지**할 목적으로

○ D사 **임원** 乙에게 D사 주식에 대한 **시세조종을 지시**하였고, 乙은 **E사 명의 계좌**를 통해 D사 주식에 대해 **시세조종 주문**을 제출하여 **주가하락**을 **방지**

➡ **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**(자본시장법 제176조) **혐의**로 조치(甲·乙)

◈ 시장에서 **수요공급의 원칙**에 따라 형성되는 **금융투자상품 가격**에 **인위적인 조작**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'**시세조종**'에 해당될 수 있음

- 반대매매를 방지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행위 역시 '**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시세조종행위**'에 해당

담당부서	조사1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국 장	김회영	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 장	장경필	(02-3145-5552)
	조사2국 조사1팀	책임자	국장대행	형남대	(02-3145-5653)
		담당자	수 석	김현진	(02-3145-5676)
	조사3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	장정훈	(02-3774-8570)
		담당자	팀 장	강성곤	(02-3774-8591)
	조사4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	김준호	(02-3774-8840)
		담당자	팀 장	진세동	(02-3774-9641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